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 연구진

김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4
<b>제2장 이론적 배경</b> .....	7
제1절 국제교류협력의 이론적 논의 .....	9
1. 개념 .....	9
2. 배경 .....	9
3. 시기별 특성 .....	10
4.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	11
5. 국제교류협력의 유형 .....	14
6. 국제교류협력의 분야 .....	14
제2절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및 성과 .....	16
1. 개요 .....	16
2. 인식과 성과 .....	17
3. 종합 및 시사점 .....	22
<b>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범위</b> .....	2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특성 .....	27
제2절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검토 .....	28
제3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법적 성격 및 유의점 .....	30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법적 성격	30
2. 지방자치단체 대외합의서의 체결권한의 범위와 한계	30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시 대외합의서 작성의 유의점	31
제4절 소결	32
<b>제4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b>	<b>35</b>
제1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37
1.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37
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조직	41
3.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42
제2절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4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46
2. 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조직	47
3. 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48
제3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	54
1.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	54
2. 국제교류협력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재	55
3. 국제교류협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55
4. 실리적 교류의 미흡	55
<b>제5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b>	<b>57</b>
제1절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방향도출	59





제2절 정치·행정 교류분야 추진방향 .....	60
1. 정치·행정 교류의 특성 .....	60
2. 기존 사업의 내실화 .....	61
3.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	61
4. 해외 사무소 운영의 내실화 .....	62
제3절 경제통상 교류분야 추진방향 .....	63
1. 투자유치 확대 .....	63
2. 관광객 유치 확대 .....	65
제4절 조직 및 운영 발전방안 .....	67
1. 국제협력과의 국제업무 컨트롤 타워기능수행 ..	67
2. 전문인력확충 .....	68
3.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적극홍보 .....	68
4. 민간단체 참여 확대 .....	69
5.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	69
<b>제6장 결론</b> .....	<b>71</b>
제1절 요약 .....	73
제2절 정책제언 .....	74
<b>참고문헌</b> .....	<b>78</b>
<b>부록1.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 및 예산</b>	
전수조사 .....	79
<b>부록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질적 확대방안:</b>	
교류지역선정 및 특성분석 .....	95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목적 .....	12
<표 2-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유형 .....	15
<표 2-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실태 .....	17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성과 .....	18
<표 2-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제도적 측면 문제점 .....	18
<표 2-6>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운영적 측면 문제점 .....	19
<표 2-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업무수행적 측면 문제점 .....	19
<표 2-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기타 측면 문제점 .....	20
<표 2-9>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자매결연시 우선적 고려사항 .....	20
<표 2-10>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조직 개편방법 .....	21
<표 2-1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예산 증대방법 .....	21
<표 2-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점영역 .....	22
<표 4-1> 전라북도의 해외 우호·자매결연 현황 .....	37
<표 4-2> 시·도 자매(우호) 체결 사례 .....	38
<표 4-3> 전라북도의 결연도시 방문 현황 .....	39
<표 4-4> 결연도시의 전라북도 방문 .....	39
<표 4-5> 전라북도 및 산하 시군 2014년 국제교류 사업 및 예산 .....	42
<표 4-6>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현황 .....	44
<표 4-7>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현황 .....	45
<표 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	46
<표 4-9> 시·도별 국제업무 부서 현황 .....	47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2014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	49
<표 5-1>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비교 .....	59





<표 6-1> 기존사업 내실화 방안 ..... 75

<표 6-2> 국제교류협력 발전방안의 세부추진전략 ..... 75

#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시기별 구분 ..... 11

<그림 4-1>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조직 ..... 4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실질적 참고자료의 미비
  - 1990년대 이후 세계화·국제화 흐름에 부응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필요한 것인지,
  -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가능한지,
  -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함
  
-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방향 설정
  - 전라북도가 초점을 두어야 할 국제교류 사업 제시
  - 전라북도의 실질적 국제교류 방안제시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추진범위를 명확화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둠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추진범위 설정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추진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와 관련한 각종 법령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추진범위 논의
-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추진방향 모색
  - 국제교류에 있어 전라북도의 비교우위 검토
  -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사업발굴
  -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실질적 방안 마련

### 2. 연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조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서적 및 논문 분석
  - 전라북도 내부 자료 및 전라북도발전연구원 보고서 조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예산 전수조사

-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 사업 및 예산 조사
- 우수 국제교류협력 사례분석
  - 국제교류협력 관련 우수사례분석
- 실질적 추진방안 제시를 위한 교류대상지역 실태조사
  -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바탕으로 교류대상지역 참고사항 연구



# 제2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국제교류협력의 이론적 논의

제2절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및 성과



## 제2장

## 이론적 배경

## 제1절 국제교류협력의 이론적 논의

## 1. 개념

- 국제교류협력이란 경제·인종·민족·종교·언어·체제·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주체 상호간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의미함
  -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주체가 자국의 가치관이나 우월성 등을 고집할 수 없고 타국의 입장을 간섭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함
- 다양한 주체, 다양한 목적, 대등한 협력관계가 핵심 키워드임
  -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집단, 기관이 주체가 됨
  -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수행함
  -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임

## 2. 배경

## □ 세계화시대의 도래

-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은 빈번한 왕래와 직·간접 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짐
  - 과거에는 외국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단일 외교창구로 이루어졌으

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외국의 상  
대기관과 직접적으로 교류함

지방화시대의 도래

- 지방에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적 행정시스템 확대 및 정착
  - 지방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개발할 필요성 증대

### 3. 시기별 특성

형성기 (해방이후~1995년)

- 국제교류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협력관계가 형성된 시기

도약기 (1995년~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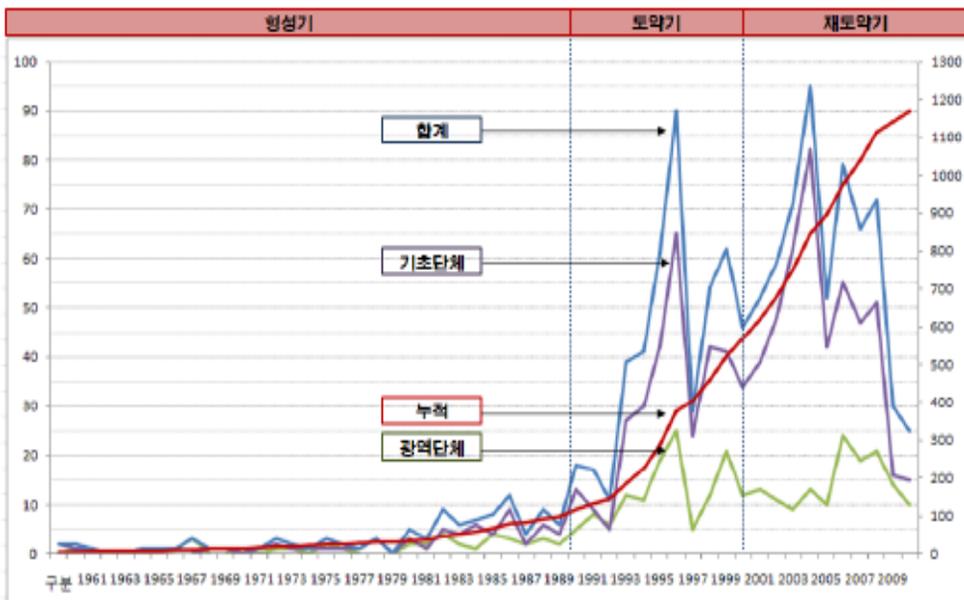
-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국제교류의 비약적 증가가 이루어짐
- 1990년대 초반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됨
  -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영향
  - 내무부 지침아래 광역자치단체별로 국제통상협력실 신설, 전문인력충원 등이 이루어짐
- 1990년대 후반은 IMF 구제금융과 경제위기로 국제교류 추진이 감소함

재도약기 (2000년 이후)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역량에 기초하여 국제교류를 추진
- 자매결연보다 우호교류의 비중이 높아짐
  - 본격적으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적 관계형성을 맺는데 주력함

- 지역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의 교류대상을 모색하고 개척하는 움직임을 보임
- 행정자치부 훈령 제47조(2000.3.27.)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폐지됨에 따라 자율적인 자매결연 추진이 가능해짐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시기별 구분



출처: 김재근·서인석(2012:424).

#### 4.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던 시기인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에는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됨
- 국제협력 인식제고
  -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인식을 확대

- 행정선진화 및 역량제고
  - 외부로부터의 선진기술과 지식 정보를 흡수하고 학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에 활용
- 지역경제 활성화
  -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 공동협력
  - 국제적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
- 문화이해 및 정보수집
  - 외국문화 이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제정보수집

<표 2-1>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목적

구 분	목 적
국제협력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공감대 형성 국제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개혁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전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 도모 등
행정선진화 및 역량 제고	발전된 선진행정과 선진제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쌍방향 상호협력 체제 구축 지방과 도시의 국제화 기반 조성 및 내부수용능력과 국제적 역량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관의 국내 활동 지원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 유치 등
공동협력	국제적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 자치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 증대 국가 외교의 보완 및 지방차원 지역외교 증진 등
문화이해 및 정보수집	외국문화 이해와 자국문화 자긍심 고취 지역정치행정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정보의 수집 등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5).

-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 측면에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제기될 수 있음
  - 해당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낮으며,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이 없는 필요성이 있음
- 지역주민의 복리와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제협력인식제고: 필요성 낮음
  - 행정선진화 및 역량제고: 필요성 중간
  -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성 높음
  - 공동협력: 필요성 낮음
  - 문화이해 및 정보수집: 필요성 낮음
- 2014년 현재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선진화 및 역량제고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
-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선진화 및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국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국제협력인식제고, 공동협력은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필요성이 낮은 목적임
  - 문화이해 및 정보수집은 굳이 직접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지 않고도 발달된 정보화의 진행으로 습득이 가능함

## 5. 국제교류협력의 유형

### 자매결연

- 당사자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사이에 친선관계를 맺는 것
  - 국내 자치단체와 해외 자치단체의 상호간의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포괄적인 교류
  - 교류대상국과의 향후 정치, 행정, 문화, 인력 등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활성화와 의지를 표명하는 약속을 맺는 것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호협력

- 자매결연 이전단계를 지칭
  - 교류추진에 대한 예고의 의미로서 사용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전제하지 않음
  -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시간적 전단계임
  -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체결되는 보다 구체적이고 차원높은 상호협력이라 할 수 있음

## 6. 국제교류협력의 분야

### 행정교류

- 양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을 교류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형태
  - 교류도시 간에 공무원의 연수, 파견 등을 통해서 행정 지식 및 관리방법을 상호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제·통상교류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설치,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 상대도시에 자국의 도시를 경제적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임

문화·예술교류

- 교류도시의 문화예술을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상호신뢰와 이해를 촉진시키는 교류활동
  - 공연, 축제, 전시회, 친선경기 등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소년교류

- 청소년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되는 교류활동

상징사업

- 공원조성, 거리명명식, 자매도시전시관 등 교류도시의 상징성을 상호 부각시키는 교류활동

<표 2-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유형

형태별	내 용
행정교류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 공무원 연수, 시찰 및 조사단
경제통상교류	경제교류협정 체결, 지역기업 진출 및 합작투자사업 전용공단 조성, 무역센터 건립 상품전시관 및 특산물 상설 전시관 개관 등
문화·예술교류	민속축제 참가, 합창단, 민속무용단 공연 사진전 개최, 서적기증, 바둑 및 서예 교류전 국악연수, 민속춤 전시회 등

형태별	내 용
인적교류	시찰 및 조사단 파견 학생교류(수업참관) 교환·파견 근무 등
체육교류	스포츠 교류단 상호파견, 각종 친선경기 등
청소년교류	청소년교류, 유학생교류, 장학금지급, 친선방문(홈스테이)
상징사업	공원조성(상호),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 시민증 수여 등
기타 교류	의료봉사활동(초청진료, 무료진료 등) 상징물, 동식물 교환 명예박사학위 수여, 재난시 상호원조 등

출처: 김재근·서인석(2012: 417)

## 제2절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및 성과

### 1. 개요

- 향후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인식과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정주 외(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 -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2013년 발간되어 참고의 가치가 큼
- 이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워크숍에 참여한 150명의 국제교류협력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

제교류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모색함

-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 중 본 연구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재구성해서 제시함

## 2. 인식과 성과

### 국제교류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실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저조하다는 응답이 41.4%로 활발하다는 응답 19.3% 보다 배가량 높게 나타남

<표 2-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활발	3	2.0
활발	26	17.3
보통	59	39.3
저조	49	32.7
매우저조	13	8.7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국제교류성과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72%,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6.7%로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성과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성과	17	11.3
약간 성과	91	60.7
보통	29	19.3
별로 성과 없음	10	6.7
전혀 성과 없음	0	0
무응답	3	2.0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국제교류추진의 문제점

○ 제도적 측면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제도적 측면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2-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제도적 측면 문제점

구분	빈도	백분율
국제교류관련제도 미흡	25	16.7
국제교류 자율성 부족	42	28.0
시스템과 매뉴얼 부재	54	36.0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21	14.0
기타	2	1.3
무응답	6	4.0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운영적 측면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운영적 측면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lt;표 2-6&gt;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운영적 측면 문제점

구분	빈도	백분율
대상지역 선정	18	12.0
예산부족	38	25.3
계획 및 준비부족	9	6.0
다양성, 지속적 교류 부진	49	32.7
비효율적 추진방식	24	16.0
기타	1	0.7
무응답	11	7.3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 업무수행적 측면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업무수행적 측면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lt;표 2-7&gt;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업무수행적 측면 문제점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성 결여	73	48.7
외국어 능력 부족	24	16.0
국제교류 필요성 인식 결여	21	14.0
담당 공무원의 권한 미약	18	12.0
지방자치단체 지원 부족	11	7.3
기타	1	0.7
무응답	2	1.3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 기타 측면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기타 측면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2-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기타 측면 문제점

구분	빈도	백분율
중앙부처의 형식적 교류	10	6.7
단체장의 의지부족	10	6.7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0	20.0
민관협력 부족	88	58.7
기타	2	1.3
무응답	10	6.6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국제교류 추진방향

○ 자매결연시 우선적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자매결연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2-9>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자매결연시 우선적 고려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여건	36	24.0
지역 산업구조	26	17.3
정치·행정적 유사성	10	6.7
역사·문화적 배경	6	4.0
국제교류협력 유사성	67	44.7
심리적 친밀감	4	2.7
무응답	11	0.6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국제교류 관련조직 개편방법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조직 개편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lt;표 2-10&gt;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조직 개편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66	44.0
전담기구 설치	44	29.3
분야별 전문가 유치	34	22.7
상관없음	3	2.0
기타	1	0.7
무응답	2	1.3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 국제교류 관련예산 증대방법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예산 증대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lt;표 2-11&gt;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예산 증대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중앙정부 보조금 증대	42	28.0
국제교류기금 신설	25	16.7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무적 편성	56	37.3
민간 부문과 연계한 지원	23	15.3
기타	2	1.3
무응답	2	1.3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 국제교류 역점영역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역점영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2-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점영역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개발영역	37	24.7
경제통상영역	56	37.3
정치행정영역	17	11.3
문화예술영역	16	10.7
사회교류영역	13	8.7
교육영역	11	7.3

자료: 이정주 외(2013) 재구성

### 3. 종합 및 시사점

#### 종합

- 국제교류의 실태는 저조하나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도측면에서는 시스템과 매뉴얼 부재, 운영측면에서는 다양성과 지속적 교류 부진, 업무수행측면에서는 전문성결여, 기타측면에서는 민관협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교류의 추진방향 마련에 있어 자매결연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국제교류협력의 유사성, 국제교류관련조직 개편방법은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국제교류 관련예산 증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무적 편성, 국제교류 역점영역은 경제통상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국제교류의 성과가 있으나 실태가 저조하므로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스템과 매뉴얼 개발

- 다양성과 지속적 교류 추진
- 민관협력 강화
- 향후 국제교류의 추진방향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 국제교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무적 편성 필요
  - 경제통상영역 중심의 국제교류 수행



# 제3장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범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특성

제2절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검토

제3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법적 성격 및 유의점

제4절 소결



## 제3장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범위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특성

- 국가외교와의 차이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외교활동과는 차원이 상이함
  
- 국가외교의 보완 수단
  - 과거에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간의 외교가 주로 행해졌으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환경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교류가 필요해지고 가능해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가 수준의 외교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정됨
  
- 경제적 활동으로 목적변화
  -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형식의 선린외교를 시작으로 발달하였지만, 점차 경제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변화되어 옴
    - 투자유치, 상호무역협정 등 경제적 목적에 중점을 둔 교류활동이 활발해 짐

## 제2절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검토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제 30조 1항

-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제28조 문화외교국에 관한 규정

- ① 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문화·학술·관광·교육·청소년·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7.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지원 및 평가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2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 28. 행정자치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2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 30.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종합

- 상기와 같은 법적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정부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음

### 제3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법적 성격 및 유의점)

####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법적 성격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외교를 수행할 수 없음
  - － 외교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없으며, 국가(중앙정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 됨
- 국가의 외교활동은 조약을 통해 이루어짐
  - －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 국제법상 조약으로 인정될 경우 당 국가는 조약의 내용에 구속되게 되고 위반시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은 국제법상 국제법주체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양자 간의 교류내용은 조약이라 볼 수 없음
  - － 국제법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대외합의서 체결의 유의사항(형식, 내용, 절차)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대외합의서는 ‘합의서’ 나 ‘기관간 약정’의 성격만이 인정됨

#### 2. 지방자치단체 대외합의서의 체결권한의 범위와 한계

- 헌법과 법령을 통해 위임된 범위 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범위 내에서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외합의서의 체결만이 허용됨
  -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외국의 관계기관과 체결하는 합

1) 본 절은 김동건·심영규(2006)을 참조하여 작성함.

의문서를 기초로 수행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MOU, 자매결연협정, 국제교류협력협정 등의 형태로 체결하는 대외합의서는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서’ 또는 ‘기간관 약정’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자매결연이나 각종 우호 협력, 상업적 활동에 있어 중앙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대외합의서는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함

###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시 대외합의서 작성의 유의점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를 기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헌법과 법령을 통해 위임된 범위 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 헌법에 규정된 업무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처리할 권한, 재산을 관리하여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서 내에 국민 전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됨
- 합의서 작성시 실무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체결주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제목부터 서명란에 이르기까지 합의서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가 당해 합의서의 체결주체로 오인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듯한 표현을 피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위임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함
  - 서명란 등에서 합의서의 체결주체가 되는 듯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서명자의 직책과 대표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조약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정식조약에 사용되는 용어, 문

- 구, 표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합의서 체결시 당해 문서가 국가간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 차원의 재정적 부담을 배제하는 문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문안의 삽입도 좋음
    - This Arrangem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 All th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unds and personnel an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ies

#### 제4절 소결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가능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임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법적성격은 무엇인가?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내용들은 합의서나 기관간 약정임
    -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이 아니므로, 체결시 국가(중앙정부)를 구속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범위는 무엇인가?
  - 추진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함

## ○ 추진불가능 사무

- 지방자치법 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lt;추진불가능사무&gt;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제교류협력의 분야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역주민의 이익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인 바, 지역주민의 이익증진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유형 중 지역주민의 이익과의 연관성이 큰 교류는 경제통상교류라 볼 수 있음
  - 국제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무원들도 국제교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응답함(하영수, 2001; 이정주 외 2013)



# 제4장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제2절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제3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



## 제4장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 제1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태

## 1.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 3국 8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 체결
  - 3개 지역(미국 뉴저지주·워싱턴주, 중국 강소성)과는 자매결연, 5개 지역(중국 상해시·산동성·운남성, 일본 가고시마현·이시카와현)과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음
  - 중국, 일본과의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lt;표 4-1&gt; 전라북도의 해외 우호·자매결연 현황

구 분	자 매 결 연 지 역		결연 일자	비 고
	국가명	도 시 명		
전라북도 (3국 8도시)	일 본	가고시마현	1989. 10. 30	우호협력
	중 국	강소성	1994. 10. 27	자매결연
	미 국	워싱턴주(State of Washington)	1996. 5. 17	자매결연
	미 국	뉴저지주(State of Newjersey)	2000. 5. 19	자매결연
	일 본	이시카와현	2001. 9. 10	우호협력
	중 국	상해시	2005. 9. 23	우호협력
	"	산동성	2006. 11. 2	우호협력
	"	운남성	2009. 10. 28	우호협력

- 타 시·도에 비해 자매(우호)결연 체결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표 4-2> 시·도 자매(우호) 체결 사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8	32	26	14	30	10	21	15	26	20	19	19	8	30	12	14	12
자매(도시)	162	23	23	8	18	5	11	8	16	7	7	6	3	3	9	10	5
우호(도시)	146	9	3	6	12	5	10	7	10	13	12	13	5	27	3	4	7
재정자립도		90.2	57.4	52.8	71	46.6	58.3	71.2	72.6	26.9	34.2	35.5	26	21.4	28.3	43.3	28.5

- 새만금과 인접한 중국, 일본과의 교류는 활발한 반면 나머지 지역과의 교류는 저조함
  - 교류횟수 순 : 중국 61.7%, 일본 27.5%, 기타(독일, 베트남 등) 9.5%, 미국 1.2%
  - 전라북도의 결연도시 방문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3> 전라북도의 결연도시 방문 현황

구분		연도	계	'14	'13	'12	'11	'10 이전	
		횟수							
계		횟수	955	39	70	76	85	685	
		인원	7478	410	752	556	311	5449	
중국	강소성	횟수	109	10	5	3	5	86	
		인원	1089	144	21	51	24	849	
	상해시	횟수	88	1	7	5	11	64	
		인원	757	2	493	15	36	211	
	산둥성	횟수	143		10	6	4	123	
		인원	272		29	11	12	220	
	운남성	횟수	18	1	2	2	4	9	
		인원	82	7	2	16	16	41	
	기타	횟수	231	9	21	22	23	156	
		인원	797	83	50	57	78	529	
	일본	가고시마	횟수	224	3	6	6	5	204
			인원	3382	23	61	73	49	3176

구분		연도	계	'14	'13	'12	'11	'10 이전
	이시카와	회수	48	4	5	6	2	31
		인원	326	38	31	49	7	201
	기타	회수	69	8	2	25	27	7
		인원	579	106	5	281	82	105
미국	워싱턴주	회수	6				3	3
		인원	118				5	113
	뉴저지주	회수	4			1	1	2
		인원	25			3	2	20
	기타	회수	15	3	12			
		인원	67	7	60			

- 결연도시의 전라북도 방문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4> 결연도시의 전라북도 방문

구분		연도	계	'14	'13	'12	'11	'10 이전	
									회수
계	회수	836	36	46	59	52	643		
	인원	8808	416	482	1142	816	5952		
중국	강소성	회수	166	4	8	9	11	134	
		인원	1595	12	91	69	75	1348	
	상해시	회수	47		2	5	4	36	
		인원	180		6	27	25	122	
	산둥성	회수	46		5	4	5	32	
		인원	867		49	611	22	185	
	운남성	회수	17	1	5	3	2	6	
		인원	65	11	5	9	13	27	
	기 타	회수	59	5	7	15	13	19	
		인원	1149	121	70	170	453	335	
	일본	가고시마	회수	218	4	5	1	4	204
			인원	3320	26	64	14	40	3176

구분		연도	계	'14	'13	'12	'11	'10 이전
	이시카와	횡수	51	5	6	5	4	31
		인원	433	41	52	65	74	201
	기 타	횡수	40	1	8	17	7	7
		인원	526	1	145	177	98	105
미국	워싱턴주	횡수	5	2				3
		인원	117	4				113
	뉴저지주	횡수	2					2
		인원	20					20
	기 타	횡수	16	14			2	0
		인원	16				16	0

- 경제, 통상, 산업분야 등 실익 창출이 가능한 교류보다는 공무원 상호방문 등의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해외사무소운영 : 1개소(중국 상해)

- 개소: 2003년 4월 7일
  - 상해(03.4.17) → 산둥성 청도(08.7.1) → 상해(12.7.3)
- 인력: 5명(공무원 3명, 현지직원 2명)
- 예산: 2014년 503백만원
- 운영: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운영
- 주요 기능 및 역할
  -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 유학생 및 관광객유치 지원
  -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지원 및 도정홍보
- 주요사업실적(2014년)
  - 특수관광객 유치 3,574명

- 수출기업 통상지원: 45개사 51억불 수출상담
- 유학생 유치 및 설명회 활동: 설명회 2회 및 유치활동 14회

□ 인적 네트워크

- 국제교류자문관 29개국 71명, 해외호남향우회 10개국 23개 단체로 구성됨
- 도정 홍보, 관광객·유학생 유치, 특산품 수출 및 도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조직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대외협력국 산하 국제협력과로 국제교류팀, 국제행사팀, 다문화지원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선5기 조직개편 시 축소되었던 조직이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1과 3팀으로 다시 확대 개편됨

<그림 4-1>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조직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국제협력과에서는 주로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국제통상과 관련된 업무는 타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는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제화업무가 업무담당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음

### 3.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 전라북도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

- 전라북도청과 산하 시군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이 배정됨
  - 전라북도청은 국제화 역량강화,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 자매(우호)결연지역 민간 교류 지원, 외국인사 초청,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 전북홍보,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등 주로 인적교류분야의 사업을 배정함
  - 산하 시군은 대부분 국제교류의 항목으로 사업을 배정함

<표 4-5> 전라북도 및 산하 시군 2014년 국제교류 사업 및 예산

지자체명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국제화 역량강화	98,400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143,000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	31,500
		자매(우호)결연지역 민간교류 지원	20,000
		외국인사 초청	27,000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 전북홍보	18,550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5,000

지자체명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전북전주시	대외협력 담당관실	공무원해외시찰 지원	200,000
		민간국제 교류지원	60,000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2,500
		국제협력 업무추진	11,500
전북군산시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활성화	222,700
		아주교류활성화	279,171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69,900
		구미교류활성화	117,740
전북익산시	기획예산과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41,430
전북정읍시	기획예산관	국제교류 활성화	212,250
전북남원시	총무과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190,000
		대외교류 협력	35,000
전북김제시	행정지원과	국제협력	218,944
전북완주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319,000
전북진안군	기획재정실	국제교류협력 강화	16,900
전북무주군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140,800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46,910
전북장수군	기획홍보실	국제교류 운영	105,400
전북임실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내실화	35,000
전북순창군	기획실	국제교류업무	228,730
전북고창군	기획예산실	국제교류	36,000
전북부안군	행정지원과	국내외 자매결연	21,648
		국제교류	150,000

□ 전라북도 주요 국제협력사업의 실적

-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 전라북도태권도시범공연단 강소성방문
  - 전라북도 미술작품 '전북특별전' 개최
  - 전라북도 강소성 축구 친선교류전
  - 전북우호교류단 강소성방문

- 전북도립국악원 기념공연
-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 개최
- 운남성 교류 5주년 기념사업
  - 운남성공식교류단 전북방문
  - 전북우호교류단 운남방문
-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 국제교류업무 관계자, 관광관계자, 투자 및 통상관계자, 스포츠 관계자, 문화 및 교육관계자 등 각계 관계자를 연수시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분야별 사업추진시 도움을 받음

<표 4-6>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현황

연도	추진실적	초청대상
2010	1회, 37명	국제교류업무 관계자
2011	1회 35명	국제교류업무 관계자
2012	2회, 23명	관광국·관광협회·여행사 관계자 투자유치·통상관계자
2013	2회, 20명	태권도협회·스포츠·국제교류부 ·수학여행단해외파견 및 문화·교육관계자
2014	1회, 23명	자매·우호지역(9개지역) 문화·국제교류 관계공무원

- 일본 우호지역과의 정례교류사업
  - 가고시마·이시카와현 교류협의회
  - 가고시마현 문화예술 교류공연(격년)
  -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청소년 상호 방문교류
  - 가고시마현 국제음악제 우리도 연수생 초청 (매년)
  - 전북·이시카와현 스포츠 교류(매년)
  - 가고시마현 변호사·건축협회 상호교류(매년)
  - 일본 민간단체간 교류매칭 추진(사진, 외국어 자원봉사 등)

-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상호 언론·관광교류 추진
- 박물관, 미술관 상호 학예사 파견 및 교류전시전(매년)

○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초청 사업

-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축제참석, 새만금 시찰, 도정홍보를 통해 친전북 네트워크 구축
- 추후 국제교류 다양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기대

<표 4-7>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현황

연도	시기	초청대상
2010	10월(세계소리축제) 10월(발효식품엑스포)	외국어대학교 어문학, 지역학 교수 20명 한국번역원 외국인 작가 20명
2011	9월(세계소리축제) 10월(발효식품엑스포)	서울대학교 외국인 교수 등 20명 외국어대학교 외국인 교수 및 주한대사관 직원 20명
2012	10월(한국음식관광축제)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부대사급 등 외교관 26명
2013	11월(무주 태권도원) 12월(무주 태권도원)	미국, 독일 등 외교관 부부18명 도내 외국인교사 26명
2014	11월(새만금) 12월(새만금)	캐나다, 독일 등 외교관 20명 주한 일본 파견공무원 30명

## 제2절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지역	광역단체		기초단체		소계 (국가)	소계 (도시)
	국가	도시	국가	도시		
합계	54	320	55	859	68	954
서울특별시	26	32	23	113	35	141
부산광역시	23	30	7	38	24	64
대구광역시	9	14	6	15	12	29
인천광역시	17	30	9	40	21	70
광주광역시	8	10	2	7	9	17
대전광역시	18	23	3	10	20	33
울산광역시	10	16	3	12	10	28
경기도	18	26	33	169	35	195
강원도	16	23	13	78	21	98
충청북도	12	19	8	35	14	54
충청남도	12	21	9	61	18	82
전라북도	3	8	8	43	9	48
전라남도	13	30	18	78	25	105
경상북도	11	13	16	61	23	72
경상남도	11	15	13	79	16	91
제주도	9	12	5	20	11	32

출처: 김재근·서인석(2012: 421) 재구성.

## 2. 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조직

-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통상부서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담당과를 배치하고 있음
  - 투자유치 등 경제통상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경제통상부서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의 부서 단 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표 4-9> 시·도별 국제업무 부서 현황

시·도명	관리부서	팀(담당)명
서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사업단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반)	국제교류담당관(국제정책팀, 미주구주팀, 아시아팀) 해외도시협력반(정책교류팀, 해외사업팀, 국제기구팀)
부산	안전행정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국제교류담당, 외국어지원담당
대구	창조경제본부 국제통상과	통상지원담당, 국제교류담당, 마이스산업담당
인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관계대사, 국제부/국제협력팀
광주	인권평화협력관실, 일자리투자정책관실 (기업육성과, 투자유 치과)	인권평화협력관(국제협력담당) 기업육성과(통상진흥담당) 투자유치과(투자유치기획담당, 외국기업유치담당)
대전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투자 유치담당) 기업지원과(기업유치담당, 통상지원담당)
울산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 투자지 원단	국제협력과(국제교류담당, 국제통상담당) 투자지원단(외자유치담당)
경기	경제실 국제협력관 외교정책과, 국제통상 과, 투자진흥과	아주협력팀장, 구미주협력팀장, 국제관계대사 수출전략팀장, 해외마케팅팀장, 마이스산업팀장 투자전략팀장, 미주팀장, 구주팀장, 아주팀장
강원	글로벌사업단	국제기획담당, 국제협력담당, 수출지원담당, GTI박람회담

시·도명	관리부서	팀(담당)명
		당,외자유치담당,국제회의담당,국제도시훈련담당,남북경제협력담당,레고랜드추진단장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정책팀장,통상진흥팀장,국제협력팀장
충남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국제지원담당,국제교류담당,통상지원담당
전북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과	국제협력과(국제교류팀장,국제행사팀장,다문화지원팀장), 투자유치과(외자유치팀장), 새만금개발과(대외경제협력팀장)
전남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담당관	국제통상과(국제기획담당,국제협력담당,FTA대응담당, 수출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관(외자유치팀)
경북	일자리민생본부 글로벌통상협력과	국제통상담당,국제교류담당
경남	경제통상본부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수출지원담당,국제협력담당,중국담당
제주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통상정책 과,평화협력과	투자정책과(국외권유치담당), 통상정책과(통상정책담당,수출지원담당,물류개선담당), 평화협력과(평화사업담당,국제교류담당,제외도민담당)

### 3. 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 광역자치단체의 2014년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이 계획됨
  - 국제교류분야는 국제회의·행사, 인적교류, 대중국교류가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통상교류분야는 투자유치, 지역사업마케팅, 해외시장개척 등이 대표적 사업임

&lt;표 4-10&gt; 광역자치단체의 2014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

지자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자매도시교류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 활성화
	글로벌인적자원네트워크 운영
	지구촌나눔한마당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	국제협력 활력 추진
	부산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운영
	자매도시 등 지원
	유엔의 날 행사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추진
	대 중국 교류협력 강화
	국제교류전시관 운영
대구광역시	국제교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국가직접사업)
	전시컨벤션산업홍보
	국제회의도시 홍보
	통상지원 및 홍보
	대학무역인력양성
	해외마케팅지원
	전시산업육성
인천광역시	국제도시교류증진
	국제화 기반구축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운영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

지자체명	사업명
광주광역시	대외교류협력사업추진
	중소수출기업마케팅지원
	MICE산업육성
	국제교류사업추진
	국제자문대사운영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운영
	해외도시 공무원 교류
	민간단체 해외교류지원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국제화기구 및 단체지원
	국제화 회의 개최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및 국제화포럼 행사
	투자유치 지원
	시정 해외홍보
	국제관계대사 운영
울산광역시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국제회의 운영 및 참석
	울산-장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국제도시화 기반 구축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 활동
	울산투자환경 국내외 홍보
세종시	국제화 기반 확립
경 기 도	교류협력 지원(자체/직접)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자체/직접)
	국제교류증진(자체/직접)
	교류협력 운영(자체/직접)
	국제개발협력사업(자체/직접)
	경기-산동 도시연합회의 개최(자체/직접)
	해외마케팅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G-Fair

지자체명	사업명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뷰티엑스포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외국 투자기업 사후 관리
	황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강 원 도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실행력 강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동북아청소년예술축전 참가
	교류지역과 20주년·40주년 기념사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주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주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외자유치 기반 조성
	국제회의 유치 및 MICE산업 육성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대회협력 및 마케팅 강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충 청 북 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해외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개최
	국제통상 기반구축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 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외국인 투자 홍보
	외국인투자기업 재정 지원
	항송산업 유치

지자체명	사업명
충청남도	공무원 해외 교류
	상해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구마모토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LA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국제 민간교류 확대
	해외시장 개척
	통상관련 행사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강화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
	자매(우호)결연지역 민간교류 지원
	외국인사 초청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 전북홍보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
	투자유치역량강화 및 투자유치 추진
	새만금산단 투자환경 홍보
전라남도	국제행사 운영
	국제행사 홍보 활동
	해외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류
	국제회의 개최·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
	FTA 활용지원 및 대응
	FTA 홍보 활동

지자체명	사업명
	해외 투자유치 활동
	해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산업 투자개발 및 기업유치
	통상진흥 촉진
	통상애로해소 및 수출기반 조성
	수출상품 해외경쟁력 강화
경 상 북 도	해외교류강화
	글로벌네트워크구축
	해외경북 이미지 제고
	국제문화교류협력
	실크로드프로젝트추진
	글로벌네트워크구축
	중소기업수출촉진
경 상 남 도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대 중국 역량 강화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지원
	대 중국 역량강화 운영경비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통상역량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제주도	국제교류 단체 지원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대외협력기반 조성
	국제교류 협력 지원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의 추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국제자유도시 기반확충
	투자유치기반조성
	국외투자유치

### 제3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

#### 1.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

-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의회의 지지가 부족함
  - 지역언론에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가 보도됨
  -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나 예산제약 등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참고기사

##### ‘있으면 뭐 하나’, 전북도 국제교류사업 유명무실

전북도민일보 2014.8.28

전라북도 국제교류사업이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협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지역초청에 국한된 교류형태로 운영되는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제교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989년 일본 가고시마현을 시작으로 3개국 8개 지역과 우호·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이 4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일본 2곳, 미국 2곳 등이다.

문제는 교류사업 대부분이 인적 교류, 초청행사 등 이벤트성 성격이 짙다 보니 사실상 실질적인 지역 경제효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교류가 공연·예술, 문화 등 상징적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무역과 투자, 관광활성화 등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북도와 중국 상해시와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 9년째가 되지만 상해시 초청으로 연 1회 도 공무원 2명씩 연수과정을 참가하고 비정례로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전북지역에 초청되거나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등 관계자의 초청행사, 상해 수출입상품교역회에 도내 기업이 참가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락

최고은 기자

## 2. 국제교류협력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재

- 국제업무가 세부 분야별로 분산되어 설치·운영에 따라 국제업무와 관련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 국제교류 업무(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외자유치 업무(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대외경제협력 업무(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가 분산 추진되어 국제화업무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함

## 3. 국제교류협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 국제화 감각을 지닌 국제특화 전문공무원이 부재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전략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음
  - －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추진력(사업의 일관성·연속성의 확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특히 전문 실무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임
  - －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어 전문인력의 계약직 채용방식 이외에는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국제교류 업무의 장기적인 특성(교류대상국과의 상호 신뢰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직위공모제 방식 등의 채용방식에 변화가 요구됨

## 4. 실리적 교류의 미흡

- 통상교류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리적 교류가 저조함
- 전라북도의 자매(우호)결연 도시 방문·초청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 교류목적에 있어서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교류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부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본격 추진과 함께 통상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교류의 비중을 높여 갈 필요가 있음

# 제5장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

제1절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방향도출

제2절 정치·행정 교류분야 추진방향

제3절 경제통상 교류분야 추진방향

제4절 조직 및 운영 발전방안



## 제5장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

## 제1절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방향도출

## □ 국제교류 사업추진의 방향도출

-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관련 업무는 크게 국제협력과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및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분산되어 있음
  - 국제협력과는 전통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은 경제통상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는 흡사 중앙정부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되어 각각 정치·행정적 교류(외교)와 경제적 교류(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

<표 5-1>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비교

구분	정치·행정적 교류	경제적 교류
중앙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및 새만금추진지원단

-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정치·행정적 교류이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적교류 중심이며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수행하는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라북도는 경제교류분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치·행정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분리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은 정치·행정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종합하면,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은 기존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와 경제교류사업의 활성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2절 정치·행정 교류분야 추진방향

### 1. 정치·행정 교류의 특성

- 정치·행정적 교류 분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적교류·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쳐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설계하고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존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재점검 및 내실화를 추구하는 방향마련이 요구됨

## 2. 기존 사업의 내실화

### 인적네트워크의 DB화

- 전라북도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 전라북도에 유학 온 유학생, 전라북도에 초청되었던 각국 인사들을 DB화하여 정례적으로 전라북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홍보상품발송, 뉴스레터발송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친 전라북도 외국인을 양성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성화

- 전라북도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신규유치 및 기존 유학생의 지원을 활성화 전략의 내실화가 필요함
  - 신규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유학박람회 참가 및 전라북도유학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개최장소: 상해, 산둥성, 일본 가고시마 현)
  - 기존 유학생의 지원을 위해서는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지역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 설립 필요성

- 보다 내실있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 주요업무

- 국제교류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속의 한국 전북 해외홍보사업 지원
  - 도민 국제화 사업
  - 도내 외국인 지원사업
  - 외국인 유치 및 사후관리
  - 경제관련 단체 및 기업인 교류
- 설치시 고려사항
  - 경제통상전문가 확보
  - 국제협력과의 업무분장 명확화

## 4. 해외 사무소 운영의 내실화

- 중국 상해에 설치되어있는 해외사무소는 다음과 현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중국 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 중국 내 전라북도민회 활성화 지원 및 도정홍보
  - 전북홍보마케팅 등 민간교류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 도내기업에 대한 통생지원
  - 도내대학으로 중국유학생 유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자매 및 우호도시와 사무소간의 교류 및 협력이 거의 없음
  - 중국관련 전문가의 양성 및 확보 미흡
  -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매체홍보 수준에 그침
  - 통생지원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

- 상해사무소를 통한 전라북도의 실익창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중국전문인력 양성 및 정규직 직원파견
  - 전북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 현지 수요파악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홍보방법의 다양화
  - 중국 내 도민회 적극 지원 및 도정홍보 강화
  - 도내기업 통상지원 강화
  - 중국 유학생 도내대학 유치 등 특수시책 사업 추진

### 제3절 경제통상 교류분야 추진방향

#### 1. 투자유치 확대

##### 투자환경 홍보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환경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기존에 우리나라 중앙정부, KOTRA,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므로, 정기적인 국제교류의 장에서 투자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특산물을 기념품으로 교환하면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안내브로셔·산업경쟁력 분석 보고서·수익모델 분석 보고서 작성, 뉴스레터, 전시회 참가 등의 수단을 활용함

외국자본 투자유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연계 및 협력이 있어야 국제교류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복잡한 사업추진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 유지
  - 전라북도내 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청-시청-군청-클러스터-테마파크 등)
  - 정기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전라북도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화교단체 등 중국내 기관과 전라북도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정보 부족으로 투자에 망설이는 중국 투자자를 위하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국제교류시, 이러한 홍보내용을 책자화하여 적극 소개

중국과 한국의 접점 산업 모색

-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권장업종 파악
  - 중국은 모든 해외투자프로젝트를 정부의 해외투자지침에 따라 업종과 규모를 결정하고 있고,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 해외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미희 외, 2012: 65), 중국 정부의 권장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권장업종은 ‘자동차 등 교통운수설비, 화공 원료, 통신설비, 기타 전자설비 등의 제조업과 무역, 소매업, R&D, 건축서비스, 교통운수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의약 등의 산업’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산업과 중국 정부의 권장업종 중 접

점을 보이는 산업군이 ‘자동차, 에너지절약산업, 환경보호, 바이오 의약’  
등이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전략적

## 2. 관광객 유치 확대

### □ 중국인 대상의 마케팅 활성화

- 중국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라북도 중국인 관광객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라북도 관광의 역사, 문화, 지출비용, 관광추천 루트 등을 탑재
  - 한국방문 중 중국어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 등에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 및 관광정보를 소개
  - 중국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국판 보그, 엘르 등의 매거진에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노출 빈도를 높임
  - 전라북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이들이 경험한 전라북도 관광을 온라인 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유학생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 □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에서 정기적인 국제 문화교류 세미나 개최

- 전주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자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 부각
  -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전승,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화, 전통문화자원과 전통문화도시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전통문화교육원, 한민족 문화교육, 체험 네트워크, 전통문화 테마파크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의 메카로 육성하고, 국제 문화교류 세미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전주국제영화제(IIFF)에 국제교류 국가 초대

- 2000년 봄부터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주류영화와는 다른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영화를 발굴하고 적극 소개하면서 내실 있고 차별화된 전 세계 대안 독립영화의 중심 영화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
  -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면서, 영화제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단편 영화 제작의 롤모델을 제시해 오고 있음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부각

-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장 조성
  - 태권도와 관련한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고 무주군 일원에 태권도 힐링캠프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개발
  - 태권도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연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기적인 국제 문화교류 세미나 때 방문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

-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는 전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코리아를 선도하는 韓商을 한 자리에 모으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임
  - 한상의 국내 경제활동에 필요한 제도, 절차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모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상 또는 한상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별(북미, 중남미, 동남아) 시장동향을 교류하며, 진출전략 등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표 한상이 멘토로 참가하여 직종(업종)간 실질적인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임
  - 전라북도에서 세계한상(韓商)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을 전라북도로 결집시키고, 이 결과를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제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유발함

#### □ 국제교류 산업시찰 관광상품 개발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시찰 형식의 관광상품 개발
  - 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방문
  - 산업시찰은 국제교류단 및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전라북도내 산업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목격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적 측면에 대한 확신을 부여함
  - 전라북도 지역 향토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산업시찰-관광-푸드 등의 연계를 통해 국제교류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함

## 제4절 조직 및 운영 발전방안

### 1. 국제협력과의 국제업무 컨트롤 타워기능수행

- 전라북도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화 및 일원화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국제업무에 있어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과가 국제교류협력의 중심부서로 자리잡고 타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업무 관련 부서의 정례회의 개최, 국제업무 관련 실적의 종합적 DB 구축 등이 필요함

## 2. 전문인력확충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임명되어 국제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
  - － 국제업무를 전문보직화하여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국제교류협력 담당자에 민간 또는 경력직 특별채용자를 임명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모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을 경험자 및 자원자로 충원하고, 보직유지의 기간을 확대(일반적인 1~2년 → 최소 3~4년 이상)
  - －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인사상 가점 및 성과금 지급
  -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국제교류협력 담당자 과정을 신설하여 도내 관련 업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마련

## 3.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적극홍보

- 전라북도의 기존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대부분 인적교류에 그친 측면이 많아 지역주민 및 언론의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함
  - － 인적교류는 들이는 예산과 인력, 시간에 비해 성과를 측정하기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음
  - －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실제로 전북주민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제교류협력의 성과를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국제업무의 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내 기자들과의 정기

미팅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 민간단체 참여 확대

-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예: 사업계획단계에서 국제협력교류자문위원회 설치 등) 민간의 호응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실제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 국제교류협력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실질적 경제교류는 오랜 기간의 신뢰관계의 기반 하에서 시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초석 마련으로서의 인적·행정적 교류의 일정한 기여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초기 인적·행정적 교류에서 경제교류단계로 수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어야 할 것임



# 제6장

##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 제6장

## 결론

## 제1절 요약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범위를 설정하고,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익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이제는 중앙에 대한 의존이나 지역내부에만 초점을 둔 사업으로는 지역의 추가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의 지역들과 교류를 통해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지역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범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의무를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성격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약정서나 협약서의 성격을 가짐
    - 국가(중앙정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전통적인 인적·문화·상징적 교류보다는 지역에 실익을 가져

다주는 경제통상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됨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은 기존 국제협력사업의 내실화와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기존 국제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해외사무소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함
-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와 관광객유치 등이 필요하며, 이의 전략방안을 제시함
  -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하며, 업무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제2절 정책제언

기존 사업의 내실화 필요

- 국제협력과는 전라북도 국제업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수행해오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lt;표 6-1&gt; 기존사업 내실화 방안

사업	방안
인적네트워크의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관련 외국인사들에 대한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생, 초청행사 인사 등</li> </ul> </li> <li>■ 홍보상품,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친 전라북도 외국인 양성</li> </ul>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유치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학박람회 참가 및 전라북도유학설명회 개최</li> </ul> </li> <li>■ 기존 유학생 지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생 선발 및 지급</li> <li>-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li> </ul> </li> </ul>

발전방안의 세부추진전략 마련 및 실행 필요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서 컨트롤타워설치, 전문인력양성, 국제교류협력 필요성 홍보, 민간참여확대,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제시함
  -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lt;표 6-2&gt; 국제교류협력 발전방안의 세부추진전략

과제	세부추진전략
컨트롤타워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과가 국제업무의 총괄기능 수행</li> <li>■ 국제업무관련 부서 정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국장 주관하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li> </ul> </li> <li>■ 국제협력과에서 유관부서의 실적 종합정리 및 관리</li> </ul>
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경험자 및 지원자로 충원</li> <li>■ 보직유지기간 확대(최소 3~4년)</li> <li>■ 승진가점,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li> <li>■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국제교류협력 담당자 과정 신설 및 도내 관련 공무원 연수 실시</li> <li>■ 국제업무 경험을 보유한 무기계약직 전문인력 채용</li> </ul>
국제교류협력필요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업무 실적을 도내 언론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기자들과 정기미팅 실시 및 국제업무 성과 홍보</li> </ul> </li> <li>■ 전북관련 외국인 DB 구축 및 뉴스레터 발송</li> </ul>

과제	세부추진전략
민간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대 교수, 지역 민간단체 인사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 수렴</li> <li>- 민간의 경험활용 및 호응 유도</li> </ul> </li> </ul>
중장기로드맵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협력 10년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년도별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정리</li> <li>- 초기 인적·행정적 교류가 경제통상교류로 확대되어 전북의 실익창조에 기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li> </ul> </li> </ul>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성공여부는 단체장의 의지에 큰 영향을 받음
  - 전라북도의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전개, 국제교류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국제교류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제교류사업에 지방의회의원 참여 확대

-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 평소에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켜야 함
  - 지방의회 자체적으로도 국제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구와 프로그램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설립 필요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통합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존 사업들을 평가하고 피

드백하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센터는 전통적인 국제교류방식인 정치·행정·인적 교류업무와 실익창출을 위한 경제통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이 필요함
- 국제교류센터에는 정치·행정 교류분야 전문가와 경제통상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확보 및 충원되어야 할 것임

#### 해외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상해 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가 필요함
  - 상해 사무소는 대중국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의 확충을 통해 해외사무소 운영을 내실화하여 경제통상교류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함

### 【참고문헌】

- 김동건·심영규. (2006). 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문제. 사회과학연구. 28: 133-153.
- 김미희 외. (201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화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409-438.
- 김현호·이소영. (2013). 글로벌 도시 대구 조성 기본구상.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오 외. (2011).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대응방안.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김형오 외. (2012).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2012-2016 동부권 미래창조 플랜.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김형오 외. (2013). 전라북도·강소성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우양호. (201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례연구: 해양도시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 협력.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 발표논문.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 이정주 외. (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5-48.
- 전라북도. (201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전주: 전라북도청.
- 하영수.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117-134.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 【부록1】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 및 예산 전수조사

표 1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 및 예산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사업단	자매도시교류	409,630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 활성화	366,615
		글로벌인적자원네트워크 운영	45,850
		지구촌나눔한마당	497,850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73,500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415,757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300,000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400,000
서울종로구	총무과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7,500
		도시간 교류 확대	105,440
서울중구	기획예산과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	131,100
서울용산구	총무과	자매도시 교류협력	86,700
서울성동구	총무과	국내·외 교류사업	133,100
서울광진구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84,055
서울동대문구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57,280
서울중랑구	총무과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79,996
서울성북구	행정지원과	국내외도시 교류지원	117,150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34,620
서울강북구	행정지원과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47,624
서울도봉구	행정지원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초청 및 방문)	61,033
서울노원구	행정지원과	자매결연 업무추진	3,000
		국제교류 활성화	36,000
서울은평구	총무과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	68,948
서울서대문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강화	77,774
서울마포구	총무과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30,280
서울양천구	총무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89,000
서울강서구	행정지원과	국내외 교류 추진	132,92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서울구로구	대외정책추진반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	85,000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34,000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10,000
서울금천구	지역경제과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41,000
서울영등포구	총무과	국외 도시 교류	69,190
		글로벌 인재육성	30,000
서울동작구	총무과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60,263
서울관악구	총무과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82,092
서울서초구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193,150
서울강남구	지역경제과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113,410
서울송파구	총무과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114,900
서울강동구	총무과	국내외 교류강화	102,882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활력 추진	527,883
		부산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35,000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운영	2,592,000
		자매도시 등 지원	83,000
		유엔의 날 행사	127,000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추진	457,922
		대 중국 교류협력 강화	29,400
		국제교류전시관 운영	25,407
부산중구	기획감사실	국제화 업무 추진	64,000
부산서구	기획감사실	의정 및 국제협력 강화	73,300
부산동구	기획감사실	대외교류 업무추진	24,600
부산영도구	평생학습과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123,670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	16,000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협력강화	23,000
부산동래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협력 추진	49,900
부산남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활성화	89,675
부산북구	기획실	해외교류 및 연수	84,000
부산해운대구	기획조정실	국제도시간 교류	35,700
부산사하구	기획실	국제교류 추진	50,550
부산금정구	총무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활성화	61,060
부산강서구	총무과	국제교류 지원	5,0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부산연제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78,400
부산수영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업무추진	56,347
부산사상구	기획감사실	국제화 추진	52,500
부산기장군	기획감사실	국제 교류 활동	18,850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583,220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363,000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국가직접사업)	920,000
대구중구	전략경영실	국내외교류협력증진	42,290
대구동구	문화관광과	외국도시와의 교류 행사	36,000
		국제교류 공무원 지원	39,31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	10,000
대구서구	기획예산실	국제교류 협력추진	73,400
대구남구	기획조정실	국내외 교류	14,220
대구북구	기획조정실	해외 선진도시 견학	151,500
대구수성구	홍보소통과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101,400
		글로벌 인재양성	18,160
대구달서구	기획조정실	국제 자매도시 교류사업 및 국제교류 활성화	50,950
대구달성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14,460
		우호교류협력도시 교류	6,450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	국제도시교류증진	208,756
		국제화 기반구축	2,428,950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운영	4,288,000
인천중구	총무과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도류	331,200
인천동구	자치행정과	자매(우호)도시 교류	38,500
인천남구	기획조정실	외빈초청지원	6,000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0
인천연수구	기획예산실	국외교류 협력지원	40,000
인천남동구	기획예산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66,400
인천부평구	경제지원과	국제교류 추진	36,200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0,000
인천계양구	지역경제과	자매도시간 교류 확대	10,0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인천서구	기획예산실	국제교류사업	30,000
인천강화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우호교류활동	176,825
인천옹진군	안전행정과	국제도시 교류증진	53,160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대외교류협력사업추진	1,000,422
광주동구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50,730
광주서구	총무과	대외 및 국제교류협력	10,756
광주남구	총무과	국제교류 협력강화	54,500
광주북구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협력지원	70,310
광주광산구	기획관리실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60,393
대전광역시	국제교류투자과	국제교류 협력운영	144,817
		해외도시 공무원 교류	80,800
		민간단체 해외교류지원	27,075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117,000
		국제화기구 및 단체지원	288,841
		국제화 회의 개최	1,540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및 국제화포럼 행사	8,000
대전동구	기획감사실	대내·외 지역 협력 강화	32,200
대전중구	기획공보실	국제교류 추진	11,200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0
대전서구	기획공보실	국제 협력관 운영	28,320
		교류도시 우호협력 행사	38,024
		해외문화 이해증진	16,430
대전유성구	기획실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108,600
대전대덕구	경영기획팀	국제화 교류추진	49,500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503,440
		국제회의 운영 및 참석	117,566
		울산-장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225,000
울산중구	총무과	국제교류사업	38,500
울산남구	총무과	국제교류 증진	238,020
울산동구	총무과	국내외교류 협력증진	83,600
울산북구	총무과	예산편성 확인불가	-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울산울주군	총무과	국제교류 활성화	315,500
세종시	국제협력담당과	국제화 기반 확립	101,450
경 기 도	교류통상과	교류협력 지원(자체/직접)	33,290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자체/직접)	269,100
		국제교류증진(자체/직접)	55,300
		교류협력 운영(자체/직접)	395,000
		국제개발협력사업(자체/직접)	100,000
		경기-산동 도시연합회의 개최(자체/직접)	150,000
경기수원시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1,474,821
		자매도시 우호증진 및 세계역량 강화	978,360
		국제교류 행사	34,000
		국제회의 활동	14,200
경기성남시	기업지원과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747,080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추진	36,000
경기의정부시	총무과	우호도시간국제 교류	66,950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 교류	39,578
		국제업무지원	51,800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	5,000
경기안양시	자치행정과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7,000
		국제화추진	259,000
경기부천시	행정지원과	국내외 교류 협력	174,884
		세계화 학습 운영	109,000
		교환 공무원 제도 운영	21,780
경기광명시	자치행정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	93,010
경기평택시	총무과	우호도시 교류	166,930
		우호도시 교류 행사	3,000
경기동두천시	특별대책지역과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91,180
		자매도시 태권도협회 사범파견 지원	12,000
경기안산시	총무과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126,500
		청소년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60,000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12,5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경기고양시	마이스산업육성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414,450
		공무국외출장지원	300,000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53,000
경기과천시	총무과	국내외 교류 추진	88,684
경기구리시	총무과	국내외 교류	34,500
경기남양주시	총무과	자매도시 협력강화	186,900
		자매도시간 민간 협력 지원	35,800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13,400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0,000
경기오산시	자치행정과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127,500
		공무국회여행	72,000
경기시흥시	행정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271,600
		국제교류 행사운영	33,000
경기군포시	자치행정과	해외자매 결연단체 교류	260,862
		국내외 자매단체 초청	23,400
경기의왕시	창의교육지원과	청소년 교류 지원	36,000
	행정지원과	국제도시 교류지원	42,400
경기하남시	자치행정과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	95,475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	20,000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가능 분담금 등 운영수단	10,860
경기용인시	정책기획과	대외협력시스템 구축	167,720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70,760
경기파주시	총무과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233,660
		민간국제교류 지원	74,000
		국제화인재육성	80,260
경기이천시	문화관광과	국제교류 활성화	114,000
경기안성시	행정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226,500
경기김포시	안전행정과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32,000
경기화성시	자치행정과	국제 교류 지원	77,000
		파견공무원 지원	44,180
경기광주시	총무과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101,16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국제화추진	140,000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	7,500
경기양주시	총무과	국제 교류 추진	74,300
경기포천시	교류협력팀	국제 자매(우호) 도시와의 협력 강화	203,800
		공무원 교환근무	52,500
		자매(우호) 도시방문 청소년 문화체험행사	31,570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101,650
		국제화 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	3,100
경기여주시	자치행정과	결연도시 협력 지원	109,020
경기연천군	자치행정과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0
		국제교류추진	84,250
경기가평군	총무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77,600
경기양평군	총무과	대내외 경쟁력 강화 - 행사지원	48,436
		대외교류업무추진	76,300
강 원 도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92,300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67,000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실행력 강화	18,000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99,700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	139,000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56,000
		동북아청소년예술축전 참가	12,000
		교류지역과 20주년·40주년 기념사업	170,000
강원춘천시	총무과	해외 우호도시 교류	119,500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 위탁	55,000
		시군구 국제화 지원	7,500
강원원주시	시정홍보실	국제자매우호도시교류	222,110
강원강릉시	공보담당관실	국제교류추진 내실화	213,500
		국내외 교류증진사업 운영경비	8,720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182,000
		내향적 국제화 확산	5,000
강원동해시	국제협력통상과	자매도시간 상호 교류	145,360
		글로벌 통상 교류 기반 조성	21,05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강원태백시	기획감사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14,120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	84,690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	4,000
강원속초시	기획감사실	교류협력활성화 지원경비	17,850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	24,800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축	42,766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인력교류	1,700
강원삼척시	기획감사실	국내외 교류	72,200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방문 등	80,000
강원홍천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지원	5,000
강원횡성군	자치행정과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33,560
		일본교류	143,600
		중국교류	113,000
		외국공무원 연수	29,200
강원영월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협력증대	30,000
강원평창군	기획감사실	국내외 교류추진	148,800
강원정선군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활성화	43,000
강원철원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활성화	60,000
강원화천군	기획감사실	이디오피아 지원사업	70,000
강원양구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협력	75,000
강원인제군	기획감사실	국내외 교류추진	115,000
강원고성군	기획감사실	국내외 교류지원	54,520
강원양양군	기획감사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76,000
		교환공무원 지원	39,550
		청소년 국제교류	33,800
충 청 북 도	국제통상과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39,400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52,0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85,300
		해외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70,000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개최	20,000
충북청주시	기획경제실 투자유치과	(청주)국제교류 활성화	169,488
		(청원)국제교류추진	26,850

지사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충북충주시	기획감사과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117,652
충북제천시	자치행정과	국외교류	120,500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13,000
충북보은군	행정과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	190,090
충북옥천군	자치행정과	국제교류관리	42,300
충북영동군	자치행정과	국외교류업무	79,000
충북증평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활성화	96,300
충북진천군	행정과	국제교류	16,000
충북괴산군	경제과	국제교류활성화	5,000
충북음성군	행정과	국내외 교류사업	54,500
		한중일 장애인단체 교류행사	6,600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	40,000
충북단양군	자치행정과	국제교류 사업	38,980
충 청 남 도	국제통상과	공무원 해외 교류	747,000
		상해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488,841
		구마모토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71,417
		LA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458,37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110,850
		국제 네트워크 구축	113,522
		해외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40,000
국제 민간교류 확대	60,000		
충남천안시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강화	658,070
충남공주시	시정담당관	국제교류	254,500
충남보령시	기획감사실	국외자매도시 교류	67,200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64,500
충남아산시	자치행정과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	196,132
충남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국제교류협력추진	423,500
충남논산시	전략기획실	국제화교류재단 출연	70,000
충남계룡시	기획전략실	해외 선진시청 견문확대 및 국제교류	86,000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 분담금	5,000
충남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국제교류 추진	165,560
충남금산군	기획감사실	국내외교류추진	39,000
충남부여군	자치행정과	자매결연단체 교류지원	192,6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국제기구 및 단체 교류	4,000
	문화재사업소	고도육성사업	700,000
충남서천군	총무과	교류협력사업 확대	26,000
충남청양군	행정지원과	교류협력 추진	88,050
충남홍성군	기획감사실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70,000
충남예산군	기획실	국내외간 교류	37,500
		일본토요오카시국제교류추진	20,000
충남태안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266,600
전라북도	다문화교류과	국제화 역량강화	98,400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143,000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	31,500
		자매(우호)결연지역 민간교류 지원	20,000
		외국인사 초청	27,000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 전북홍보	18,550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5,000
전북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실	공무원해외시찰 지원	200,000
		민간국제 교류지원	60,000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2,500
		국제협력 업무추진	11,500
전북군산시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활성화	222,700
		아주교류활성화	279,171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69,900
		구미교류활성화	117,740
전북익산시	기획예산과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41,430
전북정읍시	기획예산관	국제교류 활성화	212,250
전북남원시	총무과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190,000
		대외교류 협력	35,000
전북김제시	행정지원과	국제협력	218,944
전북완주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319,000
전북진안군	기획재정실	국제교류협력 강화	16,900
전북무주군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140,8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46,910
전북장수군	기획홍보실	국제교류 운영	105,400
전북임실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내실화	35,000
전북순창군	기획실	국제교류업무	228,730
전북고창군	기획예산실	국제교류	36,000
전북부안군	행정지원과	국내외 자매결연	21,648
		국제교류	150,000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국제행사 운영	66,000
		국제행사 홍보 활동	73,000
		해외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류	18,900
		국제회의 개최 · 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	545,500
전남목포시	투자통상과	국제교류 활성화	158,328
	자치행정과	자매도시결연 교류 행사 및 행사 초청	6,000
		국외업무여비	18,000
		국제화여비	200,000
		국제자매결연교류증진 업무추진	27,000
전남여수시	박람회지원과	국제화 업무 지원	291,468
		한중(어린이) 민박교류	6,000
	안전행정과	해외 의료 봉사활동	30,000
전남순천시	총무과	국제교류 내실화	635,566
전남나주시	정책기획실	생산적인 국제교류 추진	65,620
전남광양시	항만통상과	국제교류 증진	117,000
		국제교류협력 인적자원 육성	23,000
전남담양군	자치행정과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	31,000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 지원	5,000
전남곡성군	행정과	해외우호교류 추진	115,500
전남구례군	총무과	국제도시 파견근무자 지원	9,400
		국제교류 업무추진 외국인 통역비 보상	1,000
		국제교류자료 송부 등 우편료	500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자매결연기관간 교류추진 행사운영비	2,000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추진 국외여비	20,000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구례군-일본 운젠시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23,000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기관 등 초청	10,000
전남고흥군	기획실	국제교류 일반	98,000
		우호결연체결지원	31,400
전남보성군	총무과	국제교류 협력 추진	16,840
전남화순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31,000
전남장흥군	총무과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사업 추진	48,300
전남강진군	총무과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추진	106,300
		국제교육교류활성화	121,940
전남해남군	기획홍보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5,000
전남영암군	기획감사실	선진자치행정 국내외 연수	169,000
	총무과	일본간 교류협력	8,900
		중국간 교류협력	37,000
		국외교류협력지원	10,300
전남무안군	행정지원과	국내외 자매자치단체와 협력 및 교류	162,378
전남함평군	총무과	자매결연 교류협력 추진	13,810
전남영광군	기획예산실	국제교류 사업 추진	50,470
전남장성군	기획감사실	교류 협력 추진	75,500
전남완도군	총무과	민간교류협력	1,041,190
전남진도군	기획감사실	공무원 국외 선진 행정연수	114,222
		국제화 재단 기금조성	5,000
전남신안군	행정지원과	일본농업 해외연수	15,520
경 상 북 도	국제비즈니스과	해외교류강화	2,497,750
		글로벌네트워크구축	1,943,200
		해외경북 이미지 제고	4,440,950
		국제문화교류협력	6,178,500
경북포항시	국제협력팀	국제협력강화	77,498
		국제교류강화	523,45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일본관광객 유치 및 자매도시교류 강화	86,030
		일본현지 포항WEEK 행사	16,200
		일본관광객 유치지원	21,870
		중국관광객 유치 및 자매도시교류 강화	124,965
		중국 관광객 유치지원	12,150
경북경주시	문화관광과	국제교류홍보관 운영	9,000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	4,481,661
경북김천시	총무과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325,680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	4,000
경북안동시	행정지원실	국제교류업무지원	378,640
경북구미시	투자통상과	국제협력활동강화	506,205
		국제문화교류활동지원	27,000
경북영주시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협력추진	350,870
경북영천시	총무과	국내외 교류	459,050
경북상주시	축산유통과	국제교류사업	188,520
경북문경시	총무과	국제교류 등에 따른 해외여비	6,000
		국내외 교류협력도시 문경투어 행사	4,715
		국제교류관련 정보지 구입	240
경북경산시	투자통상과	해외선진 행정연수	297,000
		국제교류 지원	100,030
경북군위군	안전행정과	국제교류	67,250
경북의성군	총무과	국제 우호 교류사업	227,700
경북청송군	총무과	객주문학관광테마운영 외국인작가 초청행사(한중교류전)	20,000
		청송국제모터사이클챔피언십	95,000
경북영양군	총무과	공무원 해외 시찰 견학 여비	184,000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5,000
		국제교류 행사추진 통역비	4,500
		선진행정견학지원국외배낭여행	30,000
경북영덕군	총무과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40,760
경북청도군	총무과	대외협력 및 대내외교류	267,550
경북고령군	경제교통과	국제교류지원	5,0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경북성주군	총무과	국제교류지원	188,000
경북칠곡군	안전행정과	국제교류사업 지원	40,500
경북예천군	총무과	외국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촉진	20,000
		국제화여비	223,500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초청 방문	20,000
		국제교류협력증진 외빈초청	20,000
경북봉화군	총무과	국내외자매결연도시 대외교류행사지원	5,400
		국제교류행사 및 대외협력사업	14,400
		국제자매결연도시 등 우호교류도시 초청방문	24,400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초청방문(중국 등)	9,450
		국제자매결연도시간 학생우호교류	22,800
		중국 봉화시 학생우호교류	22,500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공연단 상호교류	10,000
		국제우호교류도시 지방정부관계자초청	34,000
		국내외자매결연자치단체외빈교류초청	22,500
경북울진군	총무과	국제교류추진	99,800
경북울릉군	총무과	국제학교자매결연, 우호교류추진	41,000
		국제화지원사업(전국시도지사협의회)	5,000
		공무원 해외여비	50,000
경 상 남 도	국제통상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598,400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110,000
		대 중국 역량 강화	150,000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지원	45,000
		대 중국 역량강화 운영경비	26,000
경남창원시	인사조직과	자매 · 우호도시 협력 강화	162,510
		국제교류사업 추진	185,075
경남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225,700
		공무원 해외 견학	545,000
경남통영시	지역발전 추진단	교류 지원	72,1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안전행정과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동 추진	2,000
경남사천시	총무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7,500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	10,000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10,000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10,000
		자매도시(일본 미요시시)교류 공식초청 여비	10,000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4,000
경남김해시	총무과	국내외 교류 활성화	86,765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	10,000
경남밀양시	행정과	국제교류	501,600
경남거제시	행정과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02,000
경남양산시	안전행정과	업무추진 해외연수	105,000
경남의령군	행정과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67,856
		국제자매결연 우호협력 업무추진	7,000
경남함안군	행정과	자매결연 및 교류	253,593
경남창녕군	행정과	국내외 교류추진	35,800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지원	20,000
경남고성군	행정과	사업예산 열람불가	
경남남해군	행정과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73,000
		민간단체 국제교류	66,000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40,000
경남하동군	통상교류과	국내외자매결연	206,000
경남산청군	안전행정과	국내 및 국제우호 교류사업	85,230
		국내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물품구입	6,000
경남함양군	행정과	국제도시와의 교류	94,980
		선진해외 벤치마킹	172,000
경남거창군	행정과	국내외 교류	92,000
경남합천군	안전행정과	자매도시 상호교류	21,080
	경제통상과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191,370
제주도	제주도 국제통상국	국제교류 단체 지원	20,000

지자체명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제교류 관련사업명	국제교류 사업 관련예산 (단위: 천원)
	평화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1,840,600
		대외협력기반 조성	226,540
		국제교류 협력 지원	46,000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50,000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의 추진	6,500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7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234,44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매도시 직원 교류	166,000
		국제교류도시 우호증진	61,000
		교류협력사업 지원	56,380

## 【부록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의 실질적 확대방안: 교류지역선정 및 특성분석

### 제1절 교류지역의 선정

#### □ 교류지역선정의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역주민의 이익향상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인적교류나 상징사업 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단순한 자매결연지역 방문(협정서체결)이나 상징사업 등의 개최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음
- 경제적 이익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자매교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교류지역 확대 필요성 검토

- 전라북도는 현재 3개국 8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음
- 단순히 교류지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교류지역의 양보다는 교류의 질이 지역발전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임
- 1차적으로 기존 자매결연지역과의 경제통상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교류지역을 모색한다면 경제적 교류를 통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함

#### □ 교류대상의 검토

- 기존 교류지역 중 전라북도가 경제적 이익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중국인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는 오랜 기간 우호적 교류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도 살릴 수 있음
-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라북도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만약 전라북도가 신규로 교류대상지역을 확대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신흥 개발국가 중 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과 함께 신흥 개발국가로 떠오르는 인도지역과의 교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인도는 많은 인구와 경제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향후 적절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전라북도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인도지역과 교류경험이 있는 군산시와 협력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류지역의 선정

- 중국 강소성, 상해시, 산둥성, 운남성
  - 전라북도가 기존에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은 지역으로 기존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통상교류를 확대할 수 있음
- 인도 잠셰드푸르시
  - 군산시와 2004년 8월 자매결연을 맺은 경험이 있어, 군산의 경험을 활용하고 군산과의 공동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제2절 추진지역 특성분석

### 1. 인도<sup>2)</sup>

#### □ 국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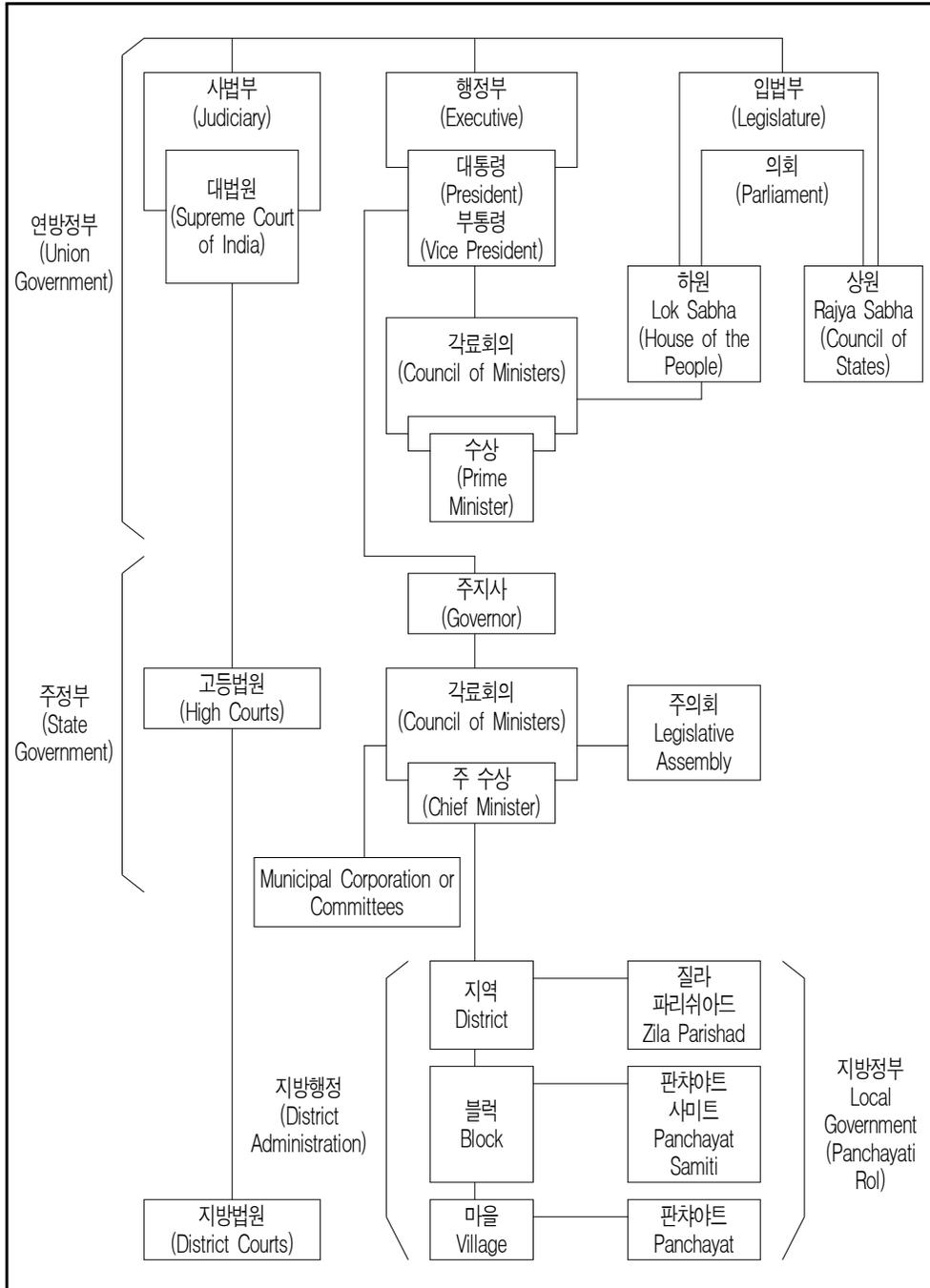
국명	■ 인도(India)			
지리	■ 서남아시아 북위 8°4' ~ 37°6' / 동경 68°7' ~ 97°25'			
면적	■ 3,287,260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남한면적의 33배)			
기후	■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기후 등 다양			
수도	■ 뉴델리(New Delhi)			
인구	■ 12억 5,970만 명(2014년 기준)			
주요도시	■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도시	인구	도시	인구
	New Delhi	1,675만	Chennai	462만
	Mumbai	1,383만	Bangalore	544만
	Kolkata	514만	Hyderabad	407만
민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언어	■ 힌디어, 영어 외 21개 공용어			
종교	■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국경일	■ 1947년 8월 16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일)			
정부	■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 프라납 무커지(Shri Pranab Mukherjee, 2012년 7월~): 국가원수(대통령)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2014년 5월~): 총리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2) Kortra 국가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www.globalwindow.org/>)

□ 정치제도 및 정부구성

국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공화국 (28개주, 7개 연방자치령)</li> </ul>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Pranab Mukherjee, 2012년 임명, 임기 5년)</li> <li>■ 상하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 수행</li> </ul>
행정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 (Narendra Modi, 2014년 임명, 임기 5년)</li> <li>■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실권을 행사</li> </ul>
입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원제 (상원: Rajya Sabha / 하원: Lok Sabha)</li> <li>■ 상원: Rajya Sabha(254석, 하원·주의원·연방자치령에 233석 배정, 대통령이 12석 지명), 임기 6년 매 2년마다 1/3씩 선출</li> <li>■ 하원: Lok Sabha(545석, 543석은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 2석은 대통령 지명) 임기 5년</li> </ul>
주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제 또는 양원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주지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행정실권을 가진 주 총리(Chief Minister)는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가 지명</li> </ul>
법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제정된 헌법 및 연국법</li> </ul>
현 집권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진보연합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li> </ul>

□ 행정조직



□ 행정구역

○ 주(29개)

주	인구	공용어
고아 주	146만	콘칸어, 마라티어
구자라트 주	6,038만	구자라트어
나갈랜드 주	199만	영어
라자스탄 주	6,862만	라자스탄어
마니푸르 주	272만	마니푸르어
마디아프라데시 주	7,260만	힌디어
마하라슈트라 주	1억 1,237만	마라티어
메갈라야 주	296만	카시어, 프나르어, 가로어, 힌디어, 영어
미조람 주	109만	미조어, 영어
비하르 주	1억 380만	힌디어, 마이틸리어, 마가히어
서벵골 주	9,135만	벵골어, 영어
시킵 주	60만	네팔어 등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138만	영어
아삼 주	3,117만	아삼어, 보도어
안드라프라데시 주	4,967만	텔루구어, 우르두어
오디샤 주	4,194만	오디아어
우타라칸드 주	-	힌디어, 우르두어
우타르프라데시 주	1억 9,958만	힌디어, 우르두어
자르칸드 주	3,296만	힌디어
잠무카슈미르 주	1,255만	우르두어, 카슈미르어, 도그리어
카르나타카 주	6,113만	칸나다어
케랄라 주	3,339만	말라얄람어
차티스가르 주	2,555만	차티스가리어, 힌디어
타밀나두 주	7,214만	타밀어
텔랑가나 주	3,529만	텔루구어, 우르두어
트리푸라 주	367만	벵골어, 트리푸라어
편자브 주	2,770만	편자브어
하리아나 주	2,535만	힌디어
히마찰프라데시 주	686만	힌디어, 파하리어

## ○ 연방직할지(7개)

연방 직할지 (연방구역)	인구	공용어
다드라나가르하벨리	34만 2853명	마라티어, 구자라트어
다망디우	24만 2911명	구자라트어
텔리 수도	1675만 3235명	힌디어, 우르두어, 영어, 편자브어
락샤드위프	6만 4429명	말리얄람어
안다만니코바르제도	37만 9944명	영어, 힌디어
찬디가르	105만 4686명	편자브어, 힌디어
푸두체리	124만 4464명	프랑스어, 타밀어

## □ 교류시 유의사항

## ○ 의도 파악의 어려움

- 인도인은 당장 구매를 할 것처럼 관심을 표현하다가도 막상 가격 협상이나 구매를 위한 상담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인도상인의 특징 상 뭐든지 일단 관심을 보인 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인도 상인은 상대방이 치르게 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역 상담 초기부터 인도 바이어의 의도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제품 구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거래에 대해 별로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간단한 업무에 대한 처리도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거래를 원하는 인도 업체의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연락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3~6개월 뒤에 갑작스레 연락을 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련 사항을 재개하는 등의 경우가 많음
- 이 외 서류 및 계약서를 중요시 하는 인도 바이어들은 수출 서류 미비나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를 빌미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수출 시 계약서상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이며 선 대금 지불보다는 정식 루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안전함

○ 복잡한 정책 및 서류절차

- 외국 업체들이 인도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호소하는 수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도의 복잡한 정책과 느린 행정 절차임
- 인도의 행정 절차는 세계에서 제일 느리고 불투명하기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인도 법 규정에 신청한 서류 처리 절차가 1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보통 정확히 명시된 기한 내에 서류가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어 제품 운송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정상적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통관 시 통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미비한 점들이 확인이 되면 이를 해결하는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 기관도 어떠한 한 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필요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5~6개의 정부 기관 담당자들을 접촉하여도 해당 담당자들이 관련 건을 잘 모르거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등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인해 계약에 관한 문화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닌 사안에 대한 통보나 요청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좋음
- 특히 인도에서 계약서는 분쟁 해결에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인은 문서화에 익숙지 않아 막연히 상대방의 호의를 믿고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인들은 문제 발생 시 태연히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후일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2. 중국<sup>3)</sup>

## □ 국가개요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Uepublic of China)	
지리	■ 아시아 대륙 동부 ~ 태평양 서안에 위치	
	방위	지리적 위치
	최북단 북위 53°33′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모허(漠河)
	최남단 북위 3°40′	난샤권다오(南沙群島)
	최동단 동경 135°5′	헤이룽장(黑龍江)과 우쭈리장(烏蘇里江)의 합류점
최서단 동경 73°40′	파미르(帕米爾) 고원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960km<sup>2</sup> (세계 제 4위, 한반도 면적의 44배)</li> <li>■ 육지 국경선의 총 길이는 약 2만 280km에 달하며 해안선 총 길이는 약 1만 8,000.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총 14개 국가로 동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이 있음.</li> <li>■ 중국 해역에는 약 7,600개의 크고 작은 도서가 있으며 섬들의 총 면적은 약 72,800km<sup>2</sup>임.</li> </ul>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대한 영토(남북 간 거리 5,500km, 동서 간 거리 5,200km)로 인해 지역 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li> <li>■ 주로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대기후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li> </ul>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北京, Beijing): 총 면적 16,411km<sup>2</sup>로 서울의 약 27배)</li> <li>■ 베이징(베이징 직할시)은 일찍이 요, 금, 원, 명 청 등 중국 고대 다섯 왕조의 수도를 거쳐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다시금 명실상부 중국의 수도로 자리잡음.</li> </ul>	

3) Kortra 국가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www.globalwindow.org/>)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억 6,072만 명 (2013년 말 기준): 인구 세계 1위</li> </ul>	
주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北京; 약어로 ‘京’): 2,609만 명</li> <li>■ 톈진(天津; 약어로 ‘津’) 1,4413 명</li> <li>■ 충칭(重慶; 약어로 ‘渝’): 2,945만 명</li> <li>■ 상하이(上海 ; 또는 약어로 ‘沪’): 2,380만 명</li> </ul>	
	구분	주요도시명
	직할시(4)	베이징, 톈진, 충칭, 상하이
	성(23)	허베이, 산서, 랴오닝, 지린, 산둥, 윈난, 간쑤, 후난
	자치구(5)	네이멍구, 광시장족, 닝샤회족, 신장위구르, 시장티베트
특별행정구(2)	홍콩, 마카오	
민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족(92%), 55개 소수민족(8%)</li> </ul>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어(漢語, Chinese): 한어는 표준어와 지방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li> </ul>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B.C 2), 도교(2세기), 천주교, 이슬람교(7세기), 기독교(19세기)</li> </ul>	
국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10월 1일</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체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집권당: 중국공산당)</li> <li>■ 국가기관: 최고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국무원(최고 행정기관), 최고인민법원(사법재판기관, 사법검찰기관),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됨.</li> <li>■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차 전인민 개최 전까지 중국 사회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최고권력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전인대 출범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 및 법령을 선전하거나 대외업무를 협의하는 조직으로 바뀜.</li> </ul>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진핑(習近平, 2013년 3월~): 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li> <li>■ 리커창(李克強, 2013년 3월~): 국무원 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 위원.</li> </ul>	

## □ 지방행정조직

-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성급(省級), 현급(縣級), 향급(鄉級)이라고 하는 3 계층의 행정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현대 중국에서는 성급과 현급의 사이에 지급(地級)이 신설되어 있음
- 중국은 지방 행정을 4계층의 수직 구조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음
- 최상층을 제1급 행정구역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광대한 영역을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에 수평 분할하고 있음.
  - 특별행정구는 엄밀하게는 제1급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음
- 제2계층의 지급의 행정 단위는 지급시, 자치주, 지구 등이 있음. 현재, 중국은 성과 현·현급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급시로 재편되고 있음. 지급시는 시라고 칭하지만, 도시지역과 주변의 농촌부를 포함한 비교적 큰 행정 단위임. 자치주나 지구는 영어에서는 prefecture 로 번역되어 지급시는 prefecture-level city로 번역됨
- 제3계층의 행정 단위가 현과 현급시임. 중국의 현은 영어에서는 county로 번역됨. 일본과 비교했을 경우, 현에서 군에 가까운 규모임. 또 영어에서는 county-level city로 번역되는 현급시가 일본의 시에 가까운 존재임.
- 제4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향급의 행정 단위로, 향(鄉)이나 진(鎮) 등으로 불림. 영어에서는 향은 township, 진은 town으로 번역됨.
-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도 자국령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진 전체 영역을 자국의 영토로 헌법에 명시하여 영토주권에 대해 대립하고 있음

## □ 지방행정구역

- 중국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 - 성급 - 현급 - 향진급이 기본관리구역음

- 여기서 성급산하에 있는 현급숫자가 많기에 중간에 성에서 위탁관리 하는 기구를 두게 되는데, 이것이 지급임. 즉 현급은 지급 산하가 아니고, 성급 산하에 있되 지급에 대다수 현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지급에 위탁관리되지 아니하고 성급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급구역을 성 직할 현급이라고 함. 신장의 경우 자치주에 지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직할시는 성급산하의 지급시가 중앙정부산하로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직접관리를 받는 구역임. 관리구역 체계상은 지급구역임. 특별행정구도 직할시와 같이 기본 관리체계는 지급구역임

○ 자치구역에 대한 등급설정

행정구역	기본	인구 집중지구	상위자치제 직할	정주민족	비정주민족
성급	성	직할시	특별행정구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지급		부성급시			
	지구	지급시	성도	자치주	명
현급	현	현급시	시할구	자치현	기, 자치기
향급	향	진	현할구, 가도	민족향	-
촌급	촌	행정촌	-	-	-

○ 1999년 12월 20일의 마카오 주권이 반환될 때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23성, 5자치구, 4직할시, 2특별행정구로 나눌 수 있어 합계 34의 일급행정구가 존재함

○ 성(23)

성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성도소재지
안후이성	安徽省 (Ānhuī Shěng)	皖 (Wǎn)	허페이시
푸젠성	福建省 (Fújiàn Shěng)	闽 (Mǐn)	푸저우시
간쑤성	甘肃省 (Gānsù Shěng)	甘/陇 (Gān/Lǒng)	란저우시

성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성도소재지
광둥성	广东省 (Guǎngdōng Shěng)	粤 (Yuè)	광저우시
구이저우성	贵州省 (Guìzhōu Shěng)	黔/贵 (Qián/Guì)	구이양시
하이난성	海南省 (Hǎinán Shěng)	琼 (Qióng)	하이커우시
허베이성	河北省 (Héběi Shěng)	冀 (Jì)	스자좡시
헤이룽장성	黑龙江省 (Hēilóngjiāng Shěng)	黑 (Hēi)	하얼빈시
허난성	河南省 (Hénán Shěng)	豫 (Yù)	정저우시
후베이성	湖北省 (Húběi Shěng)	鄂 (È)	우한시
후난성	湖南省 (Húnán Shěng)	湘 (Xiāng)	창샤시
장쑤성	江苏省 (Jiāngsū Shěng)	苏 (Sū)	난징시
장시성	江西省 (Jiāngxī Shěng)	赣 (Gàn)	난창시
지린성	吉林省 (Jílín Shěng)	吉 (Jí)	창춘시
랴오닝성	辽宁省 (Liáoníng Shěng)	辽 (Liáo)	선양시
칭하이성	青海省 (Qīnghǎi Shěng)	青 (Qīng)	시닝시
산시성	陕西省 (Shǎnxī Shěng)	陕/秦 (Shǎn/Qín)	시안시
산둥성	山东省 (Shāndōng Shěng)	鲁 (Lǔ)	지난시
산시성	山西省 (Shānxī Shěng)	晋 (Jìn)	타이위안시
쓰촨성	四川省 (Sìchuān Shěng)	川/蜀 (Chuān/Shǔ)	청두시
윈난성	云南省 (Yúnnán Shěng)	滇/云 (Diān/Yún)	쿤밍시
저장성	浙江省 (Zhèjiāng Shěng)	浙 (Zhè)	항저우시
타이완성	台湾省 (Táiwān Shěng)	台 (Tái)	타이베이시

## ○ 자치구(5)

자치구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성도소재지
광시 좡족 자치구	广西壮族自治区 (Guǎngxī Zhuàngzú Zìzhìqū)	桂	난닝 시
내몽골 자치구	内蒙古自治区 (Nèi Měnggǔ Zìzhìqū)	内蒙古 (Nèi Měnggǔ)	후허하오터 시

자치구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성도소재지
닝샤 후이족 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Níngxià Huízú Zìzhìqū)	宁 (Níng)	인촨 시
티베트 자치구	西藏自治區 (Xīzàng Zìzhìqū)	藏 (Zàng)	라싸 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	新疆維吾爾自治區 (Xīnjiāng Wéiwú'ěr Zìzhìqū)	新 (Xīn)	우루무치 시

○ 직할시(4)

직할시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청사소재지
베이징 시	北京市 (Běijīng)	京 (Jīng)	둥청 구
충칭 시	重慶市 (Chóngqing)	渝 (Yú)	위중 구
상하이 시	上海市 (Shànghǎi)	沪 / 申 (Hù / Shēn)	황푸 구
톈진 시	天津市 (Tiānjīn)	津 (Jīn)	허핑 구

○ 특별행정구(2)

특별행정구	현지 언어	중국어(병음)	약칭(병음)
홍콩 특별행정구	Hong Kong	香港特別行政區 (Xiānggǎng Tèbié Xíngzhèngqū)	港 (Gǎng)
마카오 특별행정구	Macau	澳門特別行政區 (Àomén Tèbié Xíngzhèngqū)	澳 (Ào)

□ 지역별 성향과 기질

지역	지역별 기질과 특성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학구열, 권력욕, 명예욕</li> <li>■ 문화민족, 중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며, 예의를 특히 중시</li> </ul>
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고유의 순박함이 있으며 향토애가 강함</li> <li>■ 매우 검소한 편</li> </ul>

지역	지역별 기질과 특성
둥베이	■ 음주를 즐기며, 성격이 매우 직선적
산둥	■ 몸집이 크고 성격이 단순함. ■ 교제 시 의리를 매우 중시하며, 한국인의 성격과 매우 유사함
저장	■ 계산이 빠르고 치밀하며 추진력이 강함
상하이	■ 서구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특히 여성들의 국제적 감각이 뛰어남 ■ 두뇌회전이 빠르고 실용성을 추구하며, 계산과 손익에 철저함 ■ 검소한 편이지만 경쟁소비심리와 허영심 또한 강한 편
푸젠	■ 근면하며 부지런함
광둥	■ 상술과 이재에 밝으며 두뇌회전이 매우 빨라 장사에 능함
광저우	■ 생활지수가 매우 높으며, 교육과 오락부문의 소비가 왕성함 ■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전국의 패션, 여가, 오락의 선구지
선전	■ 새로운 유명을 좇으며 사치풍조가 강함 ■ 물질적 능력을 중시하며, 주택구입에 많은 돈을 쓰는 지역

#### □ 교류시 유의사항

-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함(三思而后行, 貨比三家). 의심이 많은 중국인에게는 ‘내사람(自己人)’이 되어야 함: 朋友—好朋友—老朋友, 三顧草廬 (삼고초려)
- 판시(關係)를 이용할 것. 연줄만 찾으면 불가능은 없음. 한국 업체들은 고위직 관리나 퇴직자를 (급여를 주고) 고문으로 두고 있음. 판시도 중요하지만, 진실성이 없는 가식적 판시는 더욱 싫어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 조바심은 금물, 의연하게 임할 것. 절대로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알면 상대방은 절대 양보하지 않음.
- 자신이 중국어를 못하면 가급적 한국인 통역을 활용할 것. 중국인 통역사나 조선족 통역사의 경우 우리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음. 특히 마음대로 오역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인 통역은

중국어 실력이 조금 낮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이쪽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함.

- 끝까지 확실하지 말 것. 계약까지 체결해 놓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많음
- 자신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상대방의 답변은 정확하게 이해할 것. 중국 말 자체에 애매 모호한 단어가 많음. ‘可以’, ‘應該沒問題’라고 표현하지 절대 ‘沒問題’라고 하지 않음. 이런 말은 우리 측에서 많이 사용해야 함
- 말로 중국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 것. 한국인은 감정이 격하면 주먹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손을 쓰는 경우를 지는 것으로 간주함
- 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협상이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은 외국인에게 불리함
- 가장 먼저 판시(關係)를 이용해서 해결함
-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해야 함
-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포기해도 좋다면 재판을 청할 것
- 술자리에서는 최대한 호탕한 모습을 보이고, 업무 이야기는 낮에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임. 술자리를 통해 진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으나 술주정은 무례한 일로 간주됨
- 깡배이(干杯) : 서로 술을 권할 때는 ‘깡배이’라고 말하며 건배제의를 함
- 담배는 인정을 느끼게 해주는 유희유임. 일부 중국인은 담배를 돌려 피우므로써 공유감과 소속감을 느끼려고 함
- 적당한 선물 준비는 필수. 종류는 별로 상관이 없음. 우리 쪽에서 선물하는 것은 판시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됨. 좋은 선물은 1대1로 전달하도록 한다. 선물을 주고 나쁜 인상을 만들 필요는 없음
  - 선물은 상대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고급 손목시계, 넥타이 핀, 홍삼, 인삼, 한국 특산품 등이 무난함.
  - 거래선 방문 시 소형 계산기, 손목시계, 녹음기 등 가볍고 실용적인

선물이 좋음.

- 선물 증정 시 중국인의 전통습관에 따라 기피하는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음. (예: 괘종 시계(종말을 의미)나 거북이(욕을 상징))
- 선물 포장은 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붉은색이나 송고함을 나타내는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축의금을 줄 때도 흰 봉투에 검은 글씨는 피해야 함. (부의금은 흰 봉투를 사용, 300위안 이하의 축의금은 금물-축의금의 개념이 한국보다 훨씬 큼)
- 대부분의 중국인은 짝수를 좋아하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숫자 8을 선호함. 이는 발음이 發字 (發財: 재산이 발전하다. 즉,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와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임
- 중국인 부인을 칭찬하지 말 것. 허례성 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음
- 중국인과 식사할 때 음식은 반드시 넉넉하게 시키는 것이 좋음
- 대화주제로 가족과 관련된 얘기는 적합하지 않음. (예를 들면, 먼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본다거나 하는 등의)